

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기 의원)

의안 번호	54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김성기 의원

찬 성 자 : 남진삼, 이은미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-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군민과 방문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근 에코랜드 및 물환경체험관 등과 연계되는 권역 단위의 문화·환경 체험권을 형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람료 전면 무료

<참고> 현행 관람료 기준[별표2]

구 분	어른(19~64)	청소년(13~18), 군인	어린이(7~12)
개인	2,000원	1,500원	1,000원
단체(20명 이상)	1,500원	1,000원	500원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0. ~ 2026. 2. 23.(14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용료”란 평창돌문화체험관(이하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5조(관람시간)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위탁하고자 하는”을 “위탁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5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명예관장을 해촉 할”을 “명예관장을 해촉할”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“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」 제11조제1항”을 “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」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사용료”란 평창돌문화체험관(이하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2. “관람료”란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체험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용료”란 평창돌문화체험관(이하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관람 및 매표시간) 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2. 매표시간은 체험관 개시시간부터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.</p>	<p>제5조(관람시간)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관람료 등) ① 체험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, 별표 2에서 정하는 관람료를 납부하</p>	<p><삭 제></p>

여야 한다.

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입장권으로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.

제7조(관람료의 감면 등) ① 평창군

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민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3.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
4. 수석 등 전시 물품을 기증한 사람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

<삭 제>

및 그 유족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
다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

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

바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9. 단체(20명 이상으로 한다)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

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

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허가 등)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8조(운영지원) 제17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·시설·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1조(사용허가 등) ① -----

----- 별지 제1호서식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지 제2호서식-----
-----.

제18조(운영지원) ----- 위탁하려는 -----

-----.

제19조(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

② (생략)

제21조(감독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,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7조(위촉)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2. (생략)

제28조(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[별표 2]

5. 해당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27조(위촉) -----
- 사람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해촉) -----
----- 명예관
장을 해촉할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~ 7. 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본 조례 개정은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
연락처	(033) 330 - 2250